

서울 속으로 한발더!
시민 걸음으로 한뼘더!

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 계획

의 장



2018. 5. .



No. 133

시 의 회 사 무 처
(의정담당관)

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 일부개정 계획

‘입법조사관’ 등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을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여 담당직무에 대한 인지도 및 책임감,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-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
-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[예규 제108호(15.5.28)]

II 대외직명 사용현황

- 대외직명 사용 : 임기제(별정직)공무원 51명 [붙임 2]

대외직명	계	입법담당관	예산정책담당관	전문위원실(11)
	51명	5명	4명	42명
수석전문위원	10명	-	-	10명
입법조사관	37명	5명	1명	31명
예산분석관	4명	-	3명	1명

- 수석전문위원, 입법조사관, 예산분석관의 담당직무에 따른 임기제(별정직) 공무원에게 대외직명 부여 및 사용

- 대외직명 미사용 : 6개 부서 9명(입법조사관 7, 예산분석관 2) [붙임 3]

- 입법조사업무, 예산·재정분석업무 수행 일반직공무원 등

III 개정사유

- 입법조사업무,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직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‘입법조사관’, ‘예산분석관’ 대외직명 확대 부여 필요
- 담당공무원의 해당분야 전문화를 유도하고,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



IV

주요 개정내용

- 전문위원실, 입법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'입법조사관'을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제2조제1항, 제2항)
- 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'예산분석관'을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제2조제3항)

V

추진일정

- 일부개정안 발령 및 시행 : 2018. 5월 중

- 첨부 : 1. 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 발령문안 1부
2. 시의회사무처 대외직명 사용 현황 1부
3. 시의회사무처 대외직명 미부여 대상 현황 1부



「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」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 준 욱

2018년 5월 일



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1. 개정사유

‘입법조사업무’, ‘예산 및 재정분석업무’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‘입법조사관’, ‘예산분석관’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담당직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,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문위원실, 입법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‘입법조사관’을 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2조제1항, 제2항)
- 나. 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대외직명 ‘예산분석관’을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2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임기제(나·다급) 공무원(입법지원요원)의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.”를 “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임기제 나급 및 다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.”를 “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임기제공무원(예산재정정책요원) 중 나급 및 다급의 대외직명은 예산분석관으로 한다.”을 “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예산분석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대외직명의 선정) ① 전문위원실 4급(상당)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, <u>임기제(나·다급) 공무원(입법지원요원)의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입법담당관 임기제 나급 및 다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예산정책담당관 임기제 공무원(예산재정정책요원) 중 나급 및 다급의 대외직명은 예산분석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2조(대외직명의 선정) ① ----- -----, <u>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입법조사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입법조사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<u>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예산분석관으로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시의회사무처 대외직명 사용 현황

◇ 수석전문위원 10명, 입법조사관 37명, 예산분석관 4명

연번	소 속	직 급 (분 야)	대외직명	인원	비고
		총 계		51명	
	1 3 개 부 서	4급(전문위원)	수석전문위원	10명	
		임기제 6급(입법정책요원)	입법조사관	2명	
		임기제 7급(입법정책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3명	
		임기제 6급(입법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21명	
		임기제 7급(입법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11명	
		임기제 6급(예산재정정책요원)	예산분석관	4명	
			소 계		5명
1	입 법 담 당 관	임기제 6급(입법정책요원)	입법조사관	2명	
		임기제 7급(입법정책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3명	
		소 계		4명	
2	예 산 정 책 담 당 관	임기제 6급(예산재정정책요원)	예산분석관	3명	
		임기제 6급(입법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1명	
		소 계		40명	
3	전 문 위 원 실 (10개)	4급(전문위원)	수석전문위원	10명	
		임기제 6급(입법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20명	
		임기제 7급(입법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10명	
		소 계		2명	
4	예 결 특 위 전 문 위 원 실	임기제 6급(예산재정정책요원)	예산분석관	1명	
		임기제 7급(입법지원요원)	입법조사관	1명	

시의회사무처 대외직명 미부여 대상 현황

◇ 6개 부서 9명(입법조사관 7명, 예산분석관 2명)

연번	소 속	직 급 (분 야)	업무분야	대 상 대외직명	대상 인원	비고
		총 계			9명	
1	입 법 담 당 관	소 계			3명	
		행정7급, 6급	입법조사업무	입법조사관	2명	
		임기제 8급 (입법정책지원요원)	입법조사업무	입법조사관	1명	
2	예 산 정 책 담 당 관	소 계			2명	
		사회복지 6급	예산재정 분석업무	예산분석관	1명	
		임기제 6급 (입법지원요원)	예산재정 분석업무	예산분석관	1명	
3	전 문 위 원 실	소 계			4명	
	행 정 자 치	세무 6급	입법조사업무	입법조사관	1명	
	보 건 복 지	사회복지 6급	입법조사업무	입법조사관	1명	
	도 시 계 획 관 리	토목 6급	입법조사업무	입법조사관	1명	
	예 결 특 위	임기제 6급 (예산재정정책요원)	입법조사업무	입법조사관	1명	